

#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단시간 근로

황 수 경\*

기혼여성이 노동공급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큰 제약은 가사노동에의 시간배분이다. 이 글에서는 가사노동에의 시간배분을 전제로 두 가지 측면에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패턴을 가족주기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모형을 풀타임 고용-파트타임 고용-미취업 간의 다항선택모형으로 접근하여 기혼여성의 가사부담과 그로 인한 시간배분이 근로시간 선호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및 취업 패턴은 가족주기별로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분석의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야 함을 재확인시켜 준다. 아울러 풀타임과 파트타임 고용에 대한 선호체계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단시간 근로가 기혼여성의 대안적 고용형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1. 문제 제기

성 역할(gender role)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이 자녀양육이나 가사의 전담자라는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 주부에 대해서는 가사노동을 ‘한다’고 표현하고 남편에 대해서는 ‘돕는다’고 표현하는 예를 흔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화의 과정에서 여성 자신에게도 뿌리 깊게 투영되어 있다. 여성이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자라는 고정관념은 가족 내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 균등하지 않은 가사일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만든다.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혼여성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4시간 30분을 가사노동에 소비하고 있는 반면 기혼남성은 단 36분만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기혼여성의 경우에도 매일 3시간 21분을 가사노동에 사용하고 있다(표 1). 반면에 시장노동에서는 남성은 5시간 58분, 여성은 3시간 6분을 각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 남성은 시장노동 중심으로, 여성은 가사노동 중심으로 시간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사노동의 부담과 그로 인한 불균등한 시간배분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사노동과 시장노동 사이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은 가사노동으로, 남성은 시장노동으로 집중되고 특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Becker, 1974; Humphries, 1998). 한 사회에서 사회의식의 변화는 매우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을 해야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 시점에서 사회의식이나 그로 인한 역할구조는 주어진 조건으로 간주된다. 노동공급 분석이 기혼여성의 특수한 시간배분을 고려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표 1> 혼인상태별, 취업여부별 생활시간 사용 실태 (단위: 시간:분)

	개인유지(수면·식사등)	시장노동	가사노동	가정관리		학습	기타활동
				가정관리	가족돌보기		
미혼	10:17	2:12	0:25	0:22	0:03	4:26	6:38
남성	10:12	2:21	0:15	0:13	0:02	4:17	6:56
	10:25	2:03	0:37	0:34	0:03	4:37	6:18
기혼	10:18	4:27	2:39	2:04	0:35	0:01	6:34
남성	10:22	5:58	0:36	0:25	0:11	0:01	7:03
	10:15	3:06	4:30	3:33	0:57	0:00	6:09
미취업	10:37	0:12	5:38	4:15	1:23	0:00	7:33
	9:53	6:02	3:21	2:50	0:31	0:01	4:44

주: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1999년 생활시간조사』, 2002. 7

통상의 노동공급모형에서 경제활동참가 결정과 근로시간의 결정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된다. 즉 연속적인 예산선이 상정되고 개인의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에 따라 점점균형(tangency equilibrium)이 성립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모형에서 기혼여성의 가사부담은 시간의 기회비용(=의중임금)을 높여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영된다(Heckman, 1974). 그러나 여기에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근로시간의 측면에서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이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가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개인의 선택폭은 그리 크지 않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채용된 근로자 1인당 고정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 근로시간 이하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함께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관리의 필요상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시간을 정해놓고 작업을 하게 된다.<sup>2)</sup> 이로 인해 현실에서는 다양한 근로시간을 제시하는 일자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시간을 일해야 하는 일자리로 분포가 편중되게 된다(표 2). 이른바 최소근로시간 제약(minimum-hour constraint) 또는 고정근로시간 제약(fixed-hour constraint)이 존재한다는 것이다(Moffitt, 1982; Zabel, 1993; Feather & Shaw, 2000).

2) 공급측면의 제약에 의해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건강이나 가사부담 등 개인적인 조건으로 인해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Parsons, 1977), 통근시간과 같이 노동시장 진입에 고정(시간)비용이 소요되어 근로시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Cogan, 1980).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 개인에게도 역시 근로시간의 선택범위에 제약이 존재한다.

<표 2>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일시휴직 제외)의 1주 실근로시간 분포

(단위: 천명, %)

	전체	1-17시간	18-35시간	36-43시간	44-53시간	54시간 이상
1983	7,135 (100.0)	29 (0.4)	227 (3.2)	468 (6.5)	2,013 (28.1)	4,398 (61.4)
1988	9,528 (100.0)	76 (0.8)	254 (2.6)	753 (7.8)	2,663 (27.7)	5,781 (60.2)
1993	11,836 (100.0)	171 (1.4)	424 (3.6)	1,110 (9.3)	4,733 (39.6)	5,398 (45.2)
1998	12,121 (100.0)	266 (2.2)	700 (5.7)	1,790 (14.6)	5,129 (41.7)	4,236 (34.5)
2002	14,002 (100.0)	319 (2.3)	884 (6.2)	2,244 (15.8)	5,387 (38.0)	5,168 (36.4)

주: ( )안은 임금근로자(일시휴직 제외) 대비 구성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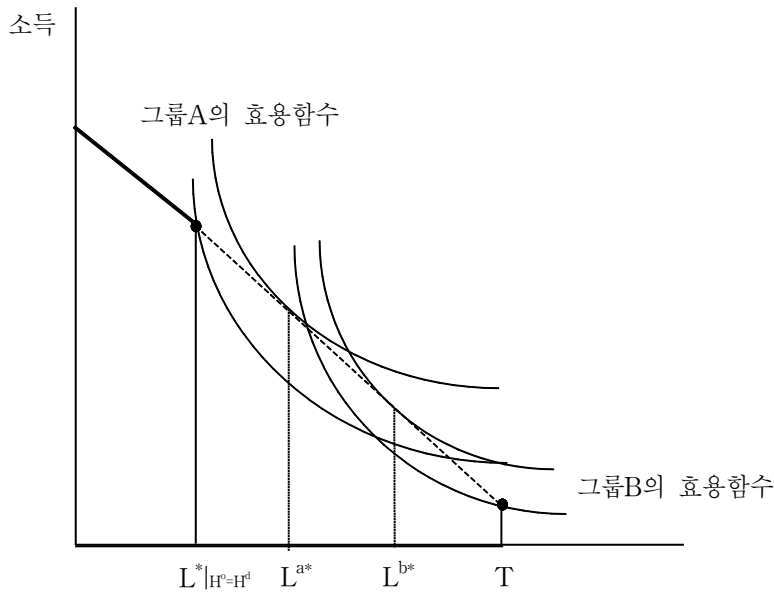
최소근로시간 제약의 존재는 일차적으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에의 시간배분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시간이 적고 이로 인해 정해진 효용극대화에 따른 공급균형이 최소근로시간 제약을 벗어날 개인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고 파트타임 고용과 같은 단시간 근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과정을 최소근로시간 제약이 있을 때의 노동공급 결정메커니즘을 통해 살펴보자. 이 경우 개인에게 제공된 근로시간( $H^0$ )과 희망하는 근로시간( $H^d$ )이 결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를 원하는 개인( $H^d \leq H^0$ )은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최소근로시간만큼 일하는 것이 전혀 일하지 않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효용을 보장해주는 상황에서만 노동공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근로시간과 노동공급의 결정이 분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Moffitt(1982)에서와 같이, 최소근로시간만큼 일하는 것이 전혀 일하지 않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효용을 보장해주는 컷-오프 조건(D)을  $H^d$ 와  $H^0$ 의 거리를 이용해 정의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 i)  $H^d - H^0 > 0$  이면 개인은 본인이 희망하는 근로시간만큼 일한다.
- ii)  $H^d = 0$  이면 개인은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일하지 않는다.
- iii)  $D > H^d - H^0 > 0$  이면 개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최소근로시간만큼 일한다.
- iv)  $H^d - H^0 > D$  이면 개인은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일하지 않는다.

즉, 단시간 근로를 원하는 기혼여성( $H^d \leq H^0$ )의 일부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만(iii) 다른 일부는 일하기를 원하더라도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iv). <그림 1>은 이를 묘사하고 있다. 유형A는 최소근로시간 제약 하에서 노동시장 참가, 유형B는 노동시장 비참가를 결정하게 된다. Zabel(1993)은 전자를 과다고용(over-employment), 후자를 과소고용(under-employment)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유형B의 경우이다. 사회적으로 장시간 근로의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면  $H^d$ 와  $H^0$ 의 간격이 더욱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성이 과소고용의 당사자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림 1> 과다고용과 과소고용의 가능성



본 연구는 가사부담과 그로 인한 기혼여성의 시간배분이 여성노동공급에 어떤 특징을 만들어내는지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노동패널」 자료가 사용되었다. 우선 II 장에서는 가족주기를 이용해 여성의 가사부담과 노동공급 구조상의 관계를 탐색한다. 다음으로 III 장에서는 기혼여성의 근로시간 선호를 분석하기 위해 풀타임-파트타임-비고용 간의 다항선택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한다.

## II. 가족주기와 여성의 노동공급 구조

여성의 경제활동 행위는 결혼·출산과 같은 가족의 형성과 성장 과정의 여러 단계들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가족은 결혼을 통한 가족의 형성과 출산에 의한 규모의 확대, 출가에 따른 규모의 축소,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등 다양한 단계를 거치며 역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의미에서 종종 가족주기(family life cycle)로 표현된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패턴은 가족의 형성 과정과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라 구분되는 가족주기별로 크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연구의 분석 단위는 기혼여성 개인이 아니라 가구 혹은 가족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Shaw, 1992; Yu et al., 1993; 이현송, 1996).

기혼여성의 근로시간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족주기는 기혼여성의 생애주기와 개략적으로 일치하는 5개 주기(결혼 → 출산 및 육아 → 집중 양육 → 양육 완료 → 자녀 결혼 및 경제력 상실)로 재구성하였다. 5개 주기는 각각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제 1 주기: 여성의 결혼으로 시작되어 첫 자녀가 출생하기 이전까지의 가족의 형성 단계,
- 제 2 주기: 첫 아이의 출산으로 시작되어 막내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의 시기로 육아부담이 집중되는 단계,
- 제 3 주기: 막내자녀가 3살이 되는 때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자녀보육 단계,
- 제 4 주기: 막내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기혼여성의 보육부담이 완료되는 단계,
- 제 5 주기: 자녀의 결혼으로 새로운 가족 단위가 형성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가구가 재편되는 단계

분석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제5차년도(2002) 자료가 사용되었다. 위에서 정의된 구분방식에 따라 가족주기별로 가구의 특성 및 기혼여성 및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본 것이 <표 3>이다.<sup>3)</sup> 「노동패널」로부터 기혼여성을 기준으로 4,411명, 기혼여성이 속한 가구를 기준으로 3,915개의 표본이 추출되었다.

각 주기별로 기혼여성의 평균 연령은 각각 28세, 30세, 36세, 55세, 71세로 증가한다. 유배우자 비율은 1~3주기에서 가장 높고 4주기(77.8%), 5주기(15.2%)의 순으로 나타난다.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 비중은 14%인데, 4주기(22.3%)와 1주기(15.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의 평균 연령도 주기별로 증가하는데, 5주기에서 기혼여성의 평균 연령이 배우자보다 높은 것은 이 시기에 배우자 없이 독신으로 자녀가구에 동거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sup>4)</sup> 여성의 평균 수명이 긴 반면 배우자가 없을 때 독자적인 경제능력이 없는 기혼여성은 자녀가구에서 동거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균 교육년수는 1주기에 속하는 기혼여성이 13.6년으로 가장 높고 주기가 올라갈수록 점차 감소하며, 반대로 교육년수에서의 배우자와의 격차는 주기가 올라갈수록 점차 증가한다. 최근에 올수록 기혼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배우자와 비교해 교육 격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구원수는 전체 가구 평균 3.6명으로 핵가족화의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각 주기별로는 5주기에서 가장 많은 4.5명, 2-4주기에서 각각 3.8명, 4.2명, 3.3명을 기록하고 있고 1주기 가구의 가구원수는 2.3명으로 나타난다. 한편 부모세대와의 동거가구 비율은 1주기에서 1.5%, 2.5%, 2주기에서 5.9%, 3주기에서 9.8%, 4주기에서 8.4%로, 부모 연령이 높아지는 3~4주기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자녀수를 살펴보면, 2주기에 해당되는 기혼여성의 경우 0~2세 자녀 1.1명, 3~6세 자녀 0.4명, 7~12세 자녀 0.1명을 두고 있으며, 3주기에 해당되는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3~6세 자녀 0.6명, 7~12세 자녀 1.1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3주기에서 기혼여성은 평균적으로 1.6명의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3) 4차년도 조사를 이용한 가족주기별 특성에 대해서는 황수경(2002) 참조

4) 유배우자인 기혼여성에 국한하면 본인의 평균 연령이 62.1세이고, 배우자의 평균 연령은 65.3세이다.

<표 3> 가족주기별 가구의 특성 및 본인·배우자의 경제활동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전 체
총 기혼여성수	160	413	1,020	2,430	388	4,411
(구성비)	(3.6)	(9.4)	(23.1)	(55.1)	(8.8)	(100.0)
총 가구수	134	387	964	2,430	.	3,915
유배우자 비율(%)	96.9	99.8	97.2	77.8	15.2	79.5
여성가구주 비율(%)	15.0	5.8	2.5	22.3	0.0	13.9
기혼여성의 평균 연령	27.8	29.7	36.2	54.6	71.4	48.5
배우자의 평균 연령	31.0	32.8	39.2	56.3	65.3	47.8
기혼여성의 평균 교육년수	13.6	13.3	12.2	7.7	3.1	9.1
배우자의 평균 교육년수	14.2	13.8	13.0	10.3	7.5	11.6
평균 가구원수	2.3	3.8	4.2	3.3	4.5	3.6
부모와의 동거 비율(%)	1.5	5.9	9.8	8.4	0.0	8.3
자녀수	.	1.63	1.96	1.27	0.08	1.31
0~2세 자녀수	.	1.08	.	.	.	0.10
3~6세 자녀수	.	0.39	0.57	.	.	0.17
7~12세 자녀수	.	0.13	1.05	.	.	0.25
가구의 월평균소득(만원)	225.4	231.1	271.8	201.9	256.5	226.5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비율(%)	54.4	25.9	50.6	46.2	11.9	42.6
월평균 근로소득(만원)	125.0	121.0	110.5	93.1	79.4	101.3
평균 근로시간(/주)	48.4	49.7	49.2	53.6	55.6	52.0
실업자 비율(%)	1.3	0.2	1.7	1.2	0.0	1.1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비율(%)	89.3	93.9	93.1	71.0	34.0	80.2
월평균 근로소득(만원)	166.3	188.6	214.8	176.5	124.0	190.2
평균 근로시간(/주)	53.0	55.3	56.7	54.2	53.1	55.1
실업자 비율(%)	4.3	2.4	1.5	0.8	2.0	1.3

주 :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는 구성비 및 평균값의 계산에서 제외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5차년도(2002) 자료

<표 3>의 하단부에는 기혼여성 및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상태는 가족주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1주기에서는 기혼여성 중 취업자가 54.4%를 차지하나 육아의 부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2주기에 들어서면 25.9%로 급격하게 줄어든다. 영유아 자녀가 없어지는 3주기에 들어서면서 취업자 비율은 50.6%로 크게 증가하며 4주기에 46%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나 자녀와 동거하는 5주기의 기혼여성은 11.9%만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의 경우 3주기에 이르기까지 90%의 취업이 유지되고 있고 영유아 자녀가 있는 2주기 들어 취업자 비율이 근소하게 증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주기에 해당하는 기혼여성은 구직을 희망하는 비율도 낮아 0.2%에 불과하다. 이는 육아의 부담이 전적으로 여성에 전가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어렵

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주기에 해당되는 기혼여성에서는 실업자 비율이 특히 높다(1.7%)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여성은 가사나 자녀 양육의 부담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어 일자리를 다시 찾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실업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구직을 포기하고 다시 전업주부로 남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실업률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4주기의 기혼여성 중 실업자 비율이 1.2%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는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혼여성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및 근로소득은 1주기에 125만원으로 가장 높고 주기가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주당근로시간은 1주기에서 가장 짧은 48.4시간이고 2-3주기에 49시간대에 머무르다 3주기부터는 50시간을 웃돌고 있다. 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및 근로시간이 3주기를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4주기부터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과 뚜렷하게 다른 양상이다. 이는 기혼여성의 취업자 구성에서 1-2주기와 3-4주기 사이에 단절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기혼여성의 취업 특성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표 4>는 취업여성에 한정하여 산업 및 직업 분포와 근로시간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 기혼여성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에 압도적 다수(68%)가 고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2주기 여성의 약 85%가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특히 개인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고 있다. 3주기 이후에서는 서비스업 비중이 다소 낮아지는데, 이는 30대 중후반과 40-50대 여성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고령층에 해당되는 4-5주기 여성은 농업부문에 취업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고학력 저연령층일 1-2주기 기혼여성 가운데서는 사업서비스업에 진출한 여성도 20%를 웃돌고 있다.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1-2주기에서는 전문직과 준전문직의 비중이 매우 높아 30-40%를 점한다. 특히 2주기는 가사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해당되는데, 이 시기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은 고숙련 경력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사무직의 비중은 1주기에 34%로 가장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2주기에 가면 이 비율이 18%대로 크게 줄어 사무직에 종사하던 기혼여성에게 가사나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 유혹이 가장 큰 것으로 짐작된다. 2주기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이 상당수 빠져나가는 것과는 달리 3~5주기에 해당하는 기혼여성 그룹에서는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으로의 집중현상이 확연하다. 특히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2주기에 25%에 불과하였으나 3주기 이후에는 40%에 달하는 비중을 점하게 된다. 생산직의 경우도 1~2주기에서는 10% 수준에 불과하나 3주기 이후에는 20% 이상으로 그 비중이 현저하게 늘고 있다. 3주기 이후의 기혼여성은 결혼 후 경력단절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때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여성에게 직업 선택의 폭이 많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가족주기별 여성의 취업 특성

(단위: 명, %)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전 체
<산업>	(85)	(103)	(514)	(1,107)	(44)	(1,851)
농림어업	0.0	0.0	2.3	15.3	29.6	10.5
제조업	15.3	15.5	22.1	20.5	9.1	20.2
건설업	1.2	0.0	1.0	1.6	2.3	1.4
사업서비스업 <sup>1</sup>	23.5	21.4	15.6	11.3	11.4	13.6
개인서비스업 <sup>2</sup>	60.0	63.1	59.0	51.3	47.7	54.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직업>	(85)	(103)	(514)	(1,105)	(45)	(1,852)
전문직	9.4	18.5	6.4	3.1	4.4	5.2
준전문직	24.7	21.4	13.0	4.6	2.2	8.7
사무직	34.1	18.5	13.0	4.6	0.0	9.0
판매서비스직	23.5	25.2	36.2	37.2	40.0	35.7
생산직	8.2	13.6	20.0	34.3	37.8	28.1
단순노무직	0.0	2.9	11.3	16.2	15.6	13.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근로시간>	(85)	(104)	(513)	(1,112)	(44)	(1,858)
15시간 이하	2.4	1.9	3.9	4.2	4.6	3.9
15-35시간	10.6	10.6	16.8	12.5	13.6	13.5
36-39시간	3.5	1.0	3.9	2.9	0.0	3.0
40-44시간	27.1	27.9	20.5	11.9	6.8	15.7
45-53시간	25.9	25.0	17.0	17.7	22.7	18.4
54시간 이상	30.6	33.7	38.0	50.8	52.3	45.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은 유효응답자수

1. 사업서비스업에는 산업대분류상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 포함됨
2. 개인서비스업에는 산업대분류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포함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5차년도(2002) 자료

근로시간의 측면을 살펴보면, 1-2주기에서 정규근로시간 범주라 할 수 있는 40-53시간대의 여성이 비교적 높은 반면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3주기에 24.6%로 가장 높고, 4-5주기에서도 18-19%로 비교적 수준을 유지한다. 가사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2주기 여성에서 오히려 단시간 근로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직업 분포에서도 확인되듯이 2주기에서 많은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반면 이때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취업을 지속하고 있는 여성 중에는 (준)전문직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기혼여성의 고용 특성을 살펴보자. <표 5>는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근속년수, 고용형태, 다양한 고용지위 지표들을 요약하고 있다. 우선 근속년수를 살펴보면, 기혼여성의 평균근속년수는 주기별로 큰 변동이 없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배우자의 평균근속년수가 4주기까지 지속적으로



로 상승하고 있는 것과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 이는 고용안정성이나 지속성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고용형태 측면을 살펴보면 3주기 이후에서 비정규 고용형태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비정규적 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라도 속하면 비정규고용이라고 정의할 때 비정규고용의 비중은 1주기 여성에서 가장 낮은 13.2%이고, 2주기 21.3%, 3주기 32.0%, 4주기 36.1%, 4주기 47.6%로 주기가 올라갈수록 비정규직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2주기를 지나면서 눈에 띄게 상승하는 것은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다. 개인서비스업, 판매서비스직을 중심으로 시간제 취업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일자리에서 2주기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기혼여성을 흡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취업여성의 고용 특성(임금근로자)

(단위: %)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전체
임금근로자수(명)	76	75	331	588	21	1,091
평균근속년수(년)	3.5	3.5	3.2	4.8	3.4	4.1
배우자 평균근속년수(년) <sup>1</sup>	3.5	4.3	7.0	10.0	6.0	7.6
	(104)	(290)	(606)	(711)	(10)	(1,721)
<비정규적 고용형태> <sup>2</sup>						
임시일용직	9.2	17.3	27.2	38.1	38.1	31.3
비정규직(자기판단)	13.2	21.3	32.0	36.1	47.6	32.4
단기계약직	5.3	5.3	3.6	4.8	0.0	4.4
시간제	7.9	13.3	20.8	15.1	19.0	16.3
무소속	1.3	0.0	4.2	10.7	14.3	7.4
<고용지위 지표>						
대기업	34.2	40.0	30.5	16.0	4.8	23.1
정규고용 <sup>3</sup>	86.8	78.7	68.0	63.9	52.4	67.6
유노조기업	25.0	21.3	9.4	6.6	9.5	9.8
조합원	19.7	13.3	6.0	2.4	4.8	5.5
대기업 정규직	27.6	34.7	23.6	9.5	4.8	16.7

주: 1. ( )안은 배우자중 임금근로자수임

2. 비정규적 고용형태의 정의 및 판별방법에 대해서는 황수경(2003) 부록 참조

3. 정규고용은 위의 비정규적 고용형태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5차년도(2002) 자료

고용의 안정적 지위를 가늠하게 하는 다른 지표로 내부자(insiders)의 규모를 생각해볼 수 있다. 내부자는 기업 내에서 거래비용(labor turnover costs)을 토대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교섭력을 갖게 되는 집단을 의미한다(McDonald & Solow, 1985; Lindbeck & Snower, 1986).<sup>5)</sup> 기업 내부 노동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혹은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증분석에서 내부노동시장 체제에 편입되어 있을 내부자와 경쟁적 시장 상황에 놓여져 있을 외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5) 내부자-외부자 가설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 분절구조가 여성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서는 황수경(2003) 참조

정의될 수 있는데, 기업 규모를 이용한 대기업(공공부문 포함)-중소기업의 구분, 정규직-비정규직의 구분, 조합원-비조합원의 구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기업 내부노동시장 체계 속에 편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을 내부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기혼여성에서 내부자(대기업 정규직) 비중을 살펴보면 16.7%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부자 비중은 여성의 가족주기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2주기 여성에서 34.7%로 가장 높고 1주기 여성이 그 다음으로 27.6%를 차지하고 있다. 3주기 여성 가운데에서도 23.6%가 내부자의 범주에 포함되나 4-5주기에서는 10% 미만으로 현저하게 감소한다. 노동시장에서 한번 퇴장한 후 재진입할 경우 내부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 기혼여성의 고용상의 제반 특징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1-2주기 사이에 비전문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이탈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숙련 경력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2주기에도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취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3주기 이후에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은 우량 일자리로 편입되기보다는 판매서비스직과 단순직을 중심으로 형성된 저숙련 비정규 고용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현재의 기혼여성 노동시장 구조로는 양질의 여성 노동력을 흡인하기에는 충분치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

### III. 근로시간 유형에 대한 기혼여성의 선호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의 노동공급 결정은 두 가지의 선택을 포함한다. 첫째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결정이고, 둘째는 참여한다면 얼마만큼의 시간을 시장노동에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결정이다. 여기서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이 세 가지 상태, 즉 풀타임고용(f), 파트타임고용(p), 미취업(n)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노동공급 여부 및 노동공급량(근로시간)을 동시에 결정하는 모형을 추정한다. 이로부터 기혼여성의 가사부담이나 그로 인한 시간배분이 시간유형으로 구분되는 고용형태에 대해 선호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개인이 노동공급상태  $j \in \{f, p, n\}$ 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대효용을  $V_{ji}$ 라고 하면, 이 간접효용함수(indirect utility function)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 \quad V_{ji} = S_{ji} + u_{ji}$$

여기서 S는 관측된 변수들의 함수로 주어지는 비확률적(non-stochastic) 부분이고 u는 관측되지 않은 변수들의 함수인 확률적 부분이다. 현실에서 관측되는 정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더미 변수가 정의된다.

$$(2) \quad D_{fi} = \begin{cases} 1 & \text{for fulltime workers} \\ 0 & \text{for otherwise,} \end{cases}$$

$$D_{pi} = \begin{cases} 1 & \text{for parttime workers} \\ 0 & \text{for otherwise,} \end{cases}$$

$$D_{ni} = \begin{cases} 1 & \text{for nonparticipants} \\ 0 & \text{for otherwise,} \end{cases}$$

효용극대화를 통해 개인이 현재 상태  $j$ 를 선택했다고 하면 상태  $j$ 에서 다른 상태에 비해 가장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3) \quad \begin{aligned} P_{ji} &= Pr [V_{ji} > V_{ki} \text{ for } k \neq j, k, j = f, p, n] \\ &= Pr [S_{ji} - S_{ki} > u_{ki} - u_{ji} \text{ for } k \neq j, k = f, p, n] \end{aligned}$$

McFadden(1973)의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에서와 같이 잔차항  $u$ 가 i.i.d.-Weibull 분포를 취한다고 가정하면, 그 차인  $(u_{ki} - u_{ji})$ 는 로지스틱(logistic) 분포를 갖게 된다. 여기에 간접 효용함수가 설명변수들의 선형함수라는 가정이 추가되면, 다음과 같은 분석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

$$(4) \quad P_{ji} = \frac{\exp(X_{ji}\beta_j)}{[\exp(X_{fi}\beta_f) + \exp(X_{pi}\beta_p) + \exp(X_{ni}\beta_n)]},$$

$$i = 1, 2, \dots, N$$

여기서  $X_{ji}$ 는 경제활동상태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 벡터이고  $\beta_j$ 는 파라미터 벡터를 나타낸다.

실증분석에는 「노동패널」 3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조사된 여성 가운데 15세 이상 54세 이하 여성만을 추출한 표본이 사용되었다. 3차년도 자료부터 이용한 것은 기본적으로 IMF 경제위기로 인한 쇼크현상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KLIPS가 3차년도 조사부터 조사항목의 구성과 패널자료로서의 일관성이 매우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다는 점도 이 기간 중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었다(KLI, 2003). 실증분석에 최종적으로 사용된 풀링(pooling) 자료에서 여성 관측치는 총 13,029명이고, 이중 기혼여성은 67.3%를 차지한다(표 6).

<표 6> 표본의 구성

(단위: 명, %)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전체	4,434	(100.0)	4,356	(100.0)	4,238	(100.0)	13,028	(100.0)
미혼여성	1,469	(33.1)	1,446	(33.2)	1,344	(31.7)	4,259	(32.7)
기혼여성	2,965	(66.9)	2,910	(66.8)	2,894	(68.3)	8,769	(67.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3-5차년도 자료

근로시간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노동공급 상태는 ‘풀타임 고용’-‘파트타임 고용’-‘비고용’의 세 범

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풀타임 고용과 파트타임 고용은 근로계약관계에 기초를 둔 고용형태 상의 구분이 아니라 근로시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 ‘전(全)시간 근로’-‘단(短)시간 근로’의 구분에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파트타임 고용은 1주 평균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자로 정의되었으며, 여기에 사용된 근로시간은 주된 일자리에서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경우는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의 합으로 측정되었다. 단시간 근로자는 3개년도 통틀어 605명으로 취업자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데,<sup>6)</sup> 절대적인 수치도 작을 뿐만 아니라 미혼(10.5%)과 기혼(9.8%) 간에 구성비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7).

<표 7> 표본의 노동공급상태 구성 (단위: 명, %)

	기혼여성				미혼여성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풀타임	1,297 (43.7)	1,283 (44.1)	1,352 (46.7)	3,932 (44.8)	504 (34.3)	518 (35.8)	481 (35.8)	1,503 (35.3)
파트타임	126 (4.3)	148 (5.1)	155 (5.4)	429 (4.9)	48 (3.3)	63 (4.4)	65 (4.8)	176 (4.1)
미취업	1,542 (52.0)	1,479 (50.8)	1,387 (47.9)	4,408 (50.3)	917 (62.4)	865 (59.8)	798 (59.4)	2,580 (60.6)
전체	2,965 (33.8)	2,910 (33.2)	2,894 (33.0)	8,769 (100.0)	1,469 (34.5)	1,446 (34.0)	1,344 (31.6)	4,259 (100.0)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X_{ji}$ )로는 연령, 학력 등 개인의 인적 특성을 비롯하여 가족구성, 가구소득 관련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가족구성 변수들은, 가족주기를 구분할 때와 마찬가지로, 「노동패널」의 가구자료 내 가구원정보를 가족관계를 이용해 계통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배우자 유무, 가족수, 자녀의 연령대별 구성, 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이 이에 포함되는데, 이들 변수들은 가사부담 정도를 대리하는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자녀의 연령대별 구성은 여성의 생애주기를 구분하는 핵심요소로서 기혼여성의 시간배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가구소득 관련 변수로는 본인의 근로소득 이외의 비근로소득과 이를 세분화한 배우자 소득 및 기타 가구소득이 설명변수에 포함되었다. 기타 가구소득은 가구의 총 월평균소득에서 자신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차감하여 구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총소득 중 자신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자산소득, 이전소득, 사회보험 등을 의미한다. 이밖에 연도별 더미 변수가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설명과 노동공급 상태별 기초통계량은 <부표 1>과 <부표 2>에 수록되어 있다.

<표 8>은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특징의 비교를 위해 미혼여성에게 대해서도 상응하는 모형을 추정하여 그 결과를 수록하였다. 기혼여성 표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모형을 추정하였는데, 비근로소득(NLINC) 변수를 사용한 모형(1)보다는 배우자 소득(WG\_M)과 기

6) 통계청의 200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파트타임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임금근로자의 9.2%이다.

타소득(INCOME)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모형(2)가 좀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체적인 결과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모형(2)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유형에 대한 기혼여성의 선호체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8> 추정 결과

	기혼여성				미혼여성	
	(1)		(2)		풀타임고용	파트타임고용
	풀타임고용	파트타임고용	풀타임고용	파트타임고용		
Intercept	4.735 ** (0.617)	-1.867 (1.532)	5.521 ** (0.620)	-1.918 (1.541)	16.135 ** (0.857)	1.820 (1.981)
ED	0.139 ** (0.034)	-0.095 (0.061)	0.141 ** (0.034)	-0.102 (0.061)	-0.468 ** (0.105)	-0.082 (0.258)
EDSQ	-0.005 ** (0.002)	0.005 (0.003)	-0.005 ** (0.002)	0.006 (0.003)	0.015 ** (0.004)	0.010 (0.009)
AGE	-0.268 ** (0.032)	0.044 (0.081)	-0.322 ** (0.032)	0.041 * (0.081)	-0.794 ** (0.044)	-0.302 ** (0.090)
AGESQ	0.003 ** (0.0004)	-0.001 (0.001)	0.004 ** (0.0004)	-0.001 (0.001)	0.011 ** (0.001)	0.005 ** (0.001)
HUSBBD	-0.298 ** (0.055)	0.315 ** (0.096)	-0.185 ** (0.056)	0.277 ** (0.100)		
HSIZE	-0.046 (0.029)	-0.075 (0.068)	-0.014 (0.029)	-0.053 (0.068)	-0.133 ** (0.034)	-0.115 (0.069)
CH2D	-0.516 ** (0.045)	-0.003 (0.117)	-0.505 ** (0.045)	0.005 (0.117)		
CH36D	-0.335 ** (0.033)	-0.232 ** (0.072)	-0.327 ** (0.033)	-0.235 ** (0.072)		
CH17D	-0.125 ** (0.030)	-0.333 ** (0.064)	-0.114 ** (0.030)	-0.333 ** (0.064)		
PARENT	0.208 ** (0.040)	0.252 ** (0.097)	0.198 ** (0.040)	0.264 ** (0.097)		
NLINC	0.002 ** (0.0002)	0.0003 (0.0003)			0.005 ** (0.0004)	0.003 ** (0.001)
WG_M			0.002 ** (0.0002)	-0.0005 (0.001)		
INCOME			-0.0001 ** (0.0000)	-0.0001 (0.0000)		
T3	-0.230 ** (0.032)	0.057 (0.068)	-0.043 (0.033)	0.159 * (0.074)	-0.516 ** (0.062)	-0.050 (0.121)
T4	-0.086 ** (0.028)	-0.015 (0.061)	-0.068 * (0.029)	0.008 (0.062)	-0.116 * (0.050)	0.047 (0.097)
N	8,765		8,764		4,259	
-2 log L	14,001.9		14,045.8		5,283.0	
$\chi^2$	13,358.9		13,892.9		5,210.7	

주: ( )안은 표준오차. \*\*:Pr<0.01, \*:Pr<0.05

우선 근로시간에 따른 고용유형에 대해 가족구성과 관련된 변수들이 매우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배우자이거나 0-12세 자녀가 있는 경우 풀타임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의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특히 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3-6세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풀타임 고용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부(-)의 효과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편 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풀타임 고용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 조부모의 도움으로 양육부담을 덜 수 있게 됨으로써 풀타임 고용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파트타임고용과 미취업 상태 간의 상대확률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파트타임 고용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가 주소득원이 됨에 따라 부수입원으로서의 파트타임고용이 선호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혼여성의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경우 파트타임 고용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흥미로운 것은 자녀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파트타임 고용확률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줄어들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파트타임 고용확률에 오히려 양(+)의 효과가 관찰되고 있다. 자녀양육 부담이 집중되는 이 시기에 파트타임고용이 적극적으로 여성을 유인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밀어내는 효과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파트타임고용이 이 시기 기혼여성에게 상대적인 친화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본인의 인적특성 변수들은 풀타임 고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만 파트타임 고용에는 거의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년수는 파트타임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지 못하는데, 이는 파트타임 노동시장에서 교육자원에 대한 가치가 덜 평가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

한편 기타소득의 소득효과를 가져와 풀타임 고용이든 파트타임 고용이든 취업 자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배우자 소득은 소득효과를 통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부(-)의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배우자 소득이 소득효과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이외에 여성의 관측되지 않은 능력이나 자원의 측면을 대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혼여성들은 풀타임 고용과 미취업 간에 뚜렷한 선호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파트타임 고용과 미취업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특히 2세 이하 자녀가 있어 가사노동 부담이 급증하는 시기에 있어서도 파트타임 고용에 대해서는 유의한 부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고 있어 단시간 근로가 이들 기혼여성에게 대안적인 고용형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 IV. 맺음말

우리나라에는 기혼여성, 특히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이 집중되는 30대 여성에서 휴유인력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 글의 분석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0-2세)가 있는 2주기의 기혼여성이 자녀양육

및 가사부담으로 인해 대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들은 가사부담이 줄어드는 3주기 이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게 되는데, 이들의 고용지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이 매우 협소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혼여성 노동시장의 현주소가 고학력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단시간 고용에 대한 선호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우 적극적인 의미에서 단시간 근로에 대한 선호가 그리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전반적으로 단시간 근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맹아는 찾아볼 수 있다. 특히 2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여성에게 단시간 근로라는 고용형태는 상대적인 친화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시간 근로가 가사노동 수행이라는 현실적 제약 하에서 기혼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가정-직장 병립형 고용형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양한 단시간 근로 형태의 작업스케줄이 제시되고 여성의 근로시간에 대한 선호가 적절하게 표출될 수 있다면 잠재인력으로 숨어있는 기혼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기대임금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이 단순직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재취업 시장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이들 고학력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고학력 기혼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건의료, 보육, 문화, 환경 등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고학력 기혼여성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파트타임 고용형태를 활용한다면 고학력 이탈자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기혼여성의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하는 것과 동시에 기혼여성의 일자리를 좀더 매력적으로 만듦으로써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일할 유인을 높이려는 정책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선영규(1991), 「한국 기혼여성의 시간제 취업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1991
- 이현송(1996), 「가족의 생애주기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회.
- 황수경(2003), 「내부자(Insiders) 노동시장과 외부자(Outsiders) 노동시장의 구조 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황수경·김기현·김지경·이상호·손희전(2003),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V)』, 한국노동연구원
- Becker, G.S. (1974), On the Relevance of the New Economics of the Family (in *Is Economic Theory With It?*), AER, Vol. 64, No. 2,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Eighty-six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May, 1974), pp. 317-319.
- Cogan, J.F. (1980), Labor Supply with Costs of Labor Market Entry, in *Female Labor Supply*, ed. by J.P.Smith.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eather, P.M. & Shaw, W.D., The Demand for leisure time in the presence of constrained work hours, *Economic Inquiry* v38 n4, 2000 pp.651-661
- Heckman, James (1974), Shadow Prices, Market Wages, and Labor Supply, *Econometrica*, Vol. 42, No. 4. (Jul., 1974), pp. 679-694.
- Humphries, J. (1998), Towards a family-friendly economics, *New Political Economy*, v3(2), pp. 223-251.
- Lindbeck A. & D J. Snower(1986), Wage Setting, Unemployment, and Insider-Outsider Relations (in *Changes in Wage Norms*),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Ninety-Eigh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6, No. 2, pp. 235-239.
- Maddala, G.S. (1983),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Donald, Ian M. & Robert M. Solow(1985), Wages and Employment in a Segmented Labor Marke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0, No. 4. (Nov., 1985), pp. 1115-1141.
- McFadden, D. (1973), Conditional logit analysis of qualitative choice behavior. In P. Zarembka (Ed.), *Frontiers in Econometrics*. New York: Academic.
- Moffitt, Robert (1982), The Tobit Model, Hours of Work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4, No. 3. (Aug., 1982), pp. 510-515.
- Mroz, Thomas A. (1987), The sensitivity of an empirical model of married women's hours of work to economic and statistical assumptions, *Econometrica*, v55 n4, pp. 765-99
- Parsons, Donald O. (1977), Health, Family Structure, and Labor Supply, AER, Vol. 67, No. 4.



(Sep., 1977), pp. 703-712.

Shaw, K. L.(1992), The life-cycl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and its implications for household income inequality, *Economic Inquiry*, v(4), 659-772.

Yu, L. C. Wang, M. Q. Kaltreider, L. & Chien, Y. 1993, The impact of family migration and family life cycle on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college-educated women, *Work and Occupations*, v20(2), 233-246

Zabel, J.E.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Hours of Work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Four Models of Labor Supply Behavior, *JLE*, vol. 11, No.2, pp. 387-416

<부표 1> 변수 설명과 기초통계량 (기혼여성)

변수명	변수 설명	전체	미취업	파트타임	풀타임
HOUR	1주 평균근로시간 (=노동공급함수의 종속변수)	14.378 (23.583)	0 0	22.96 (9.286)	29.561 (27.581)
AGE	본인의 연령 (AGSQ=AGE*AGE)	39.439 (8.115)	38.194 (8.552)	39.434 (7.072)	40.836 (7.468)
ED	본인의 교육년수 (EDSQ=ED*ED)	11.05 (3.128)	11.415 (2.932)	11.047 (3.338)	10.642 (3.264)
HUSBD	유배우자 더미	0.940 (0.237)	0.963 (0.188)	0.883 (0.321)	0.921 (0.270)
HSIZE	동거가족수	3.962 (1.070)	3.943 (1.039)	3.862 (0.989)	3.993 (1.112)
CH2D	2세 이하 자녀 더미	0.141 (0.348)	0.213 (0.409)	0.065 (0.247)	0.068 (0.252)
CH36D	3~6세 자녀 더미	0.218 (0.413)	0.282 (0.450)	0.228 (0.420)	0.145 (0.353)
CH712D	7~12세 자녀 더미	0.281 (0.450)	0.274 (0.446)	0.424 (0.495)	0.274 (0.446)
PARENT	부모와의 동거 더미	0.139 (0.346)	0.119 (0.324)	0.100 (0.301)	0.165 (0.371)
NLINC*	본인소득 제외한 비근로소득(만원)	-16.093 (239.490)	2.082 (255.646)	-25.983 (163.263)	-35.390 (225.845)
WG_M	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소득(만원)	141.162 (172.491)	155.977 (185.025)	121.119 (132.673)	126.741 (159.904)
INCOME	본인과 배우자 근로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만원)	1965.962 (2695.008)	1896.711 (2863.856)	1835.643 (2000.25)	2057.839 (2560.044)
표본수		18,769	4,408	429	3,932

주 : ( )안은 표준편차

\* 비근로소득은 본인 및 배우자의 월평균소득과 가구의 연간총소득의 단위를 일치시키면서 하향편의를 보여  
음의 값을 가지나, 상대적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부표 2> 변수 설명과 기초통계량 (미혼여성)

변수명	변수 설명	전체	풀타임	파트타임	미취업
HOUR	1주 평균근로시간 (=노동공급함수의 종속변수)	17.645 (24.384)	0 0	20.631 (10.535)	47.584 (15.485)
AGE	본인의 연령 (AGSQ=AGE*AGE)	21.996 (5.621)	20.117 (4.978)	24.392 (5.554)	24.941 (5.293)
ED	본인의 교육년수 (EDSQ=ED*ED)	12.642 (2.447)	12.015 (2.465)	14.148 (2.248)	13.541 (2.048)
HSIZE	동거가족수	4.268 (1.236)	4.360 (1.091)	4.125 (1.384)	4.126 (1.424)
NLINC	본인소득 제외한 비근로소득(만원)	135.177 (210.146)	165.482 (216.817)	136.812 (203.378)	82.964 (188.015)
표본수		14,259	2,580	176	1,503

주 : 앞의 <표 1>과 동일